

제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139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1398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가단685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박성룡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중

변론종결 2024. 7. 3.

판결선고 2024. 9. 11.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가단685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J은 피고 B, C, D, E, F, G, H, I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2. 6. 19. 접수 제49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 C, D, E, F, G, H, I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 8행의 각 ‘피고’를 각 ‘피고 J’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제6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괄호 안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69012 판결’ 뒤에 ‘위

판결은 그 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그 결론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해주었다는 인정사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원고와 매도인 K 명의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의 존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수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증여약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 단지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단기간에 제주도 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다보니 주변에 사기꾼이나 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 J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2. 4. 25.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작성 시부터 매수인을 피고 J으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⑨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 직접적인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래 상속될 재산을 미리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은 점, 당시 피고 J은 원고의 자녀 중 유일한 기혼자이자 장남이었던 점,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준 경우 부모가 계속하여 재산에 대한 관리권,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되는 모습인 점 등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증여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만한 유력한 사정들이다(원고의 증여 의사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그 이후에 생긴 것인지는 이와 같은 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 정가원, 판사 이승욱

별지